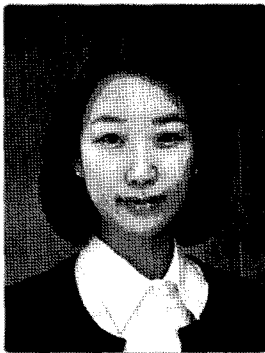


IP 범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IP 범죄 대응 움직임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해 보자.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인프라팀 연구원

I. 들어가며

지난 7월, 미국 백악관은 IP 범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2011 영국 IP 범죄 전략」 보고서와 「2011 영국 IP 범죄 연례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는 양국 모두 IP 범죄가 IP 집행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하고 집행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는 7월 20일자로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윤중용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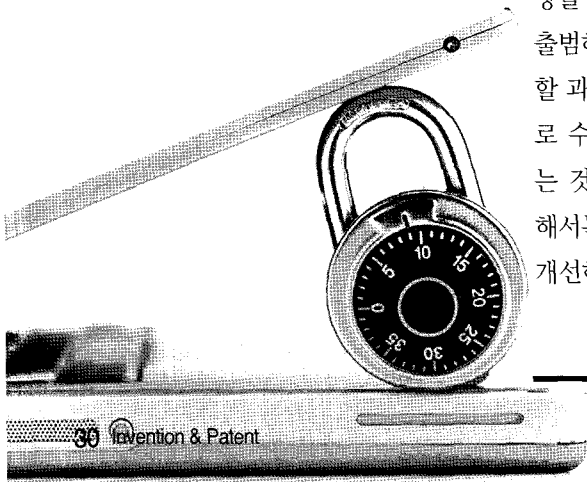
는데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주요국의 IP 범죄 대응 움직임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해보겠다.

II. Intellectual Property Crime이란?

(1) 정의

IP 범죄(IP crime)는 기술 등의 발달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져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직까지 명확한 IP 범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IP 범죄에 대해 말할 때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IP 범죄를 위조(counterfeiting)나 불법복제 등의 해적행위(piracy)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크게 디지털 범죄와 물리적 범죄로 나누고 있다.¹⁾ 디지털 IP 범죄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디지털 형식에 대해 불법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며 P2P 서비스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²⁾ 물리적 IP 범죄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에 대해 위조하거나 침해 또는 복제된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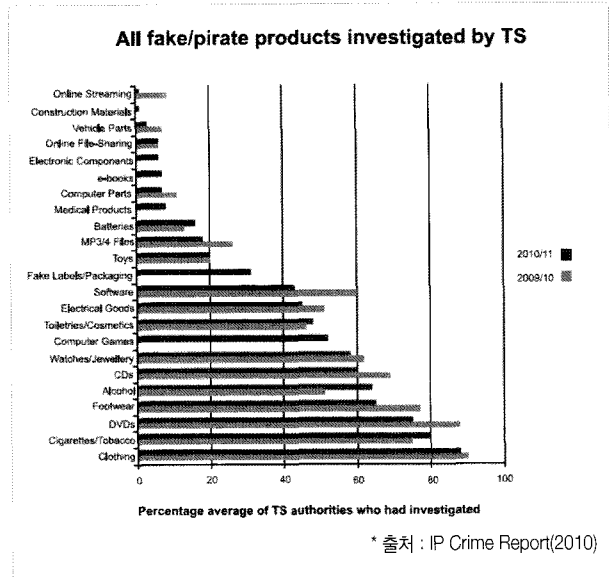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IP 범죄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비계법(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등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는 추세이며,⁴⁾⁵⁾ 미국의 경우는 IP 범죄를 경제범죄에 속하는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파악하여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에 포함시켜 별도로 다루고 있다.⁶⁾

(2) 규모

2009년 OECD는 2008년까지 유형자산에 대한 세계 위조 및 불법복제의 규모를 조사한 바 있으며 약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형식 등의 무형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IP 범죄 규모의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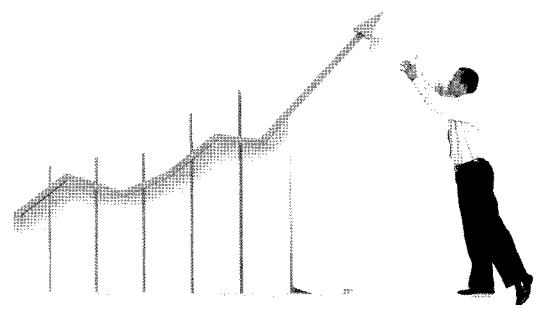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2009년 7월 발표한 결과를 참고하면 2008년 EU 지역 외로 수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로 의심되는 품목들의 규모가 2007년에 비해 126% 증가한 1억 7,800만 달러의 규모로 조사되었다.⁸⁾

영국 세관에서 2009~2010년 동안 압류한 침해품의 규모는 약 400만 건이었으며, 피해액은 약 4,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침해비율이 높은 품목은 의류였으며 그 다음으로 DVD가 2009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침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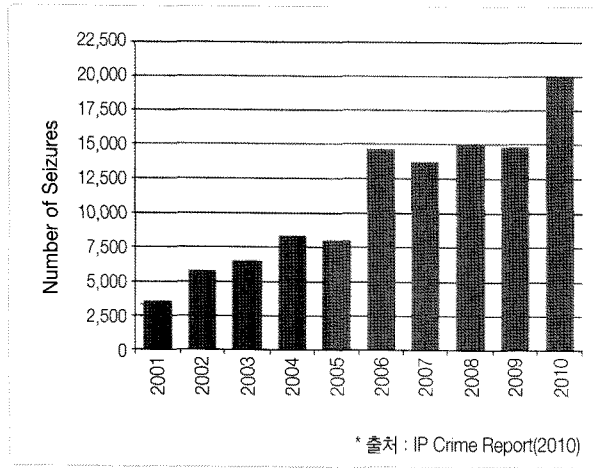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거래기준국(TS)이 조사한 침해품목 비율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 관세집행국(ICE)이 지난 1월 공동으로 발표한 2010년 회계연도 압류내역 보고를 참고하면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로 압류하는 물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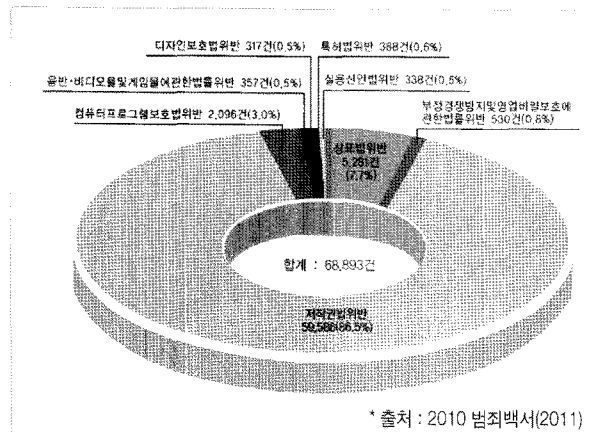


1) IP Crime Group, 2010 IP Crime Report, 2010, pp.7-8.
 2) Id.
 3) Id.
 4) 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2011, p.103.
 5) 박경우, "지식재산권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2010, pp.105-106.
 6) FBI 홈페이지(<http://www.fbi.gov/>)최종방문 : 2011.8.16).
 7) IP Crime Group, 2009 IP Crime Report, 2009, p.7.
 8) Id.
 9) supra note 5, p.48.



[그림 2] 미국의 연도별 지식재산권 침해품 압류 건수¹⁾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발생한 IP 범죄는 35,166 건인데 비해 2009년에는 68,893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죄명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전체 중 8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표법 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이 있다.¹¹⁾ 한편 전체 특별법 위반 범죄 중에 IP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5.1%로 아직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¹²⁾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향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3]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구성비(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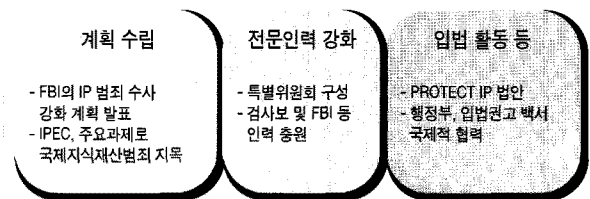
III. 범죄 대응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대대적인 IP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주 및 지역의 단속기관, 국제 단속기관들과 협력하여 2010년 2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단속노력을 감독 및 조정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Gary G. Grindler 법무부 차관이 15명의 검사보를 새로 임명하고, 20명의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미국 전역에 수사 전담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FBI는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10월 발표하며 불법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다국적 범죄 집단, 디자인과 발명, 영업비밀, 문학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FBI의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 대상으로, 상용항공기 및 군용항공기의 모방품 수사와 관련하여 연방항공기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1년 6월에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인 Victoria Espinel이 법무부의 가장 큰 과제로 온라인 해적 행위와 같은 국제지식재산 범죄를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IP 범죄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법)을 2008년 제정한 이후 가장 활발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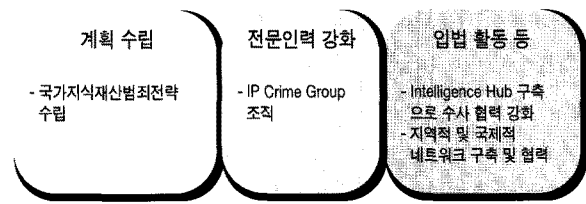
[그림 4] 미국의 IP 범죄 대응 흐름도

법제적인 측면의 활동도 활발하여 지난 3월, Patrick Leahy 상원의원의 지지 하에 PROTECT IP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도메인네임 등록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등록된 도메인네임 등록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가하는 등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를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IPEC의 연례보고서를 반영하여 지식재산침해에 대해 입법권고 백서를 발간하여 경제적 간섭행위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한 의약품 범죄 등에 대해 양형 최대기준의 상향을 권고하는 등 입법적인 권고사항들을 제안하였다.

(2) 영국

영국은 2004년부터 IP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지식재산범죄전략(National IP Crime Strategy)을 수립하여 UKIPO에 의해 IP Crime Group이라는 범죄담당그룹을 조직하였으며 주요 IP 범죄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룹의 역할은 IP 범죄와 관련된 정책 문제들 논의, 협동조치 구현, IP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IP 범죄 보고서 발간이다.¹³⁾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집행 중심의 보고서였으나 최근 보고서는 디지털 IP 범죄에 대한 유형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범죄 보고서 외에도 IP 보호를 위해 각종 범죄 대응책 및 보호 전략을 소개하는 자료들도 발간하고 있다.¹⁴⁾



[그림 5] 영국의 IP 범죄 대응 흐름도

국가적인 수준의 대응을 위해 IP 범죄 DB관리 시스템인 'Intelligence Hub'를 구축하여 법집행기관들의 수사활동에 협력하고 있으며,¹⁵⁾ 범죄와의 관련성을 미리 예방 및 단절, 온·오프라인 유통단계에서의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품 거래 제재, 범죄자 재산 몰수 등 IP 범죄의 유인 축소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¹⁶⁾ 또한 UKIPO가 영국 전역을 아우르는 활동을 조직화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집행기관, 민간 영역 간 네트워크 형성과 조직화에 더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⁷⁾

앞서 IP 범죄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압류 건수가 증가하자 일차적으로 EU와 협력하여 수출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3) 국제협력

IP 범죄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으

10) US CB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Fiscal Year 2010 Seizure Statistics, 2011, p.5.

11) 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2011, p.103.

12) 2010년 범죄백서를 참고하면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특별법 위반의 범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이 3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7%이며 IP 범죄는 5.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4번째 규모를 차지한다. Id., p.50.

13) UKIPO 홈페이지(<http://www.ip.gov.uk>) 참조(최종방문일 : 2011.8.17).

14) Id.

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2011.1,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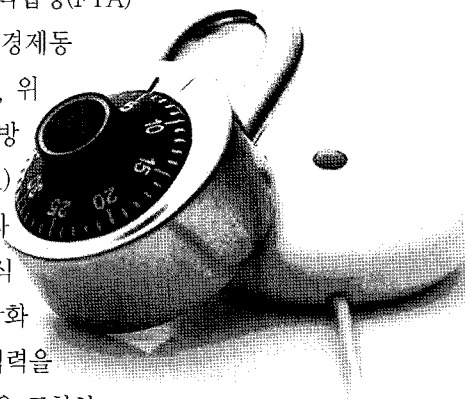
16) UKIPO, The UK IP Crime Strategy 2011, p.6.

17) supra note 13.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징¹⁸⁾이 있으므로 국제적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IP 범죄 근절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와 집행기관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WIPO 등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는 각국의 다양한 법제도를 포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IP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함께 각국의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다국적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는 2002년 각 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IP 범죄 근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류 뿐 아니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컨퍼런스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미국이 2010년 설치한 IP 범죄 특별위원회는 IP 범죄 및 국제 범죄조직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집행자문위원회,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제상공회의소(ICC)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등 양자 및 다자 조약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등 세계는 지금 IP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IP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지만 대응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으나 최근 검찰청(지식재산권 전담부), 특허청(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IP 범죄 담당기관과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있는 26개의 지방검찰청에 전담부가 합동 단속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검거 활동을 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사이버 범죄와 같이 한 국가의 경제와 공공의 안전,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지만 범죄 적발과 처벌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범죄들도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3기)가 IP 범죄 등 4개 범죄군에 대해 2012년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기로 계획하고 지식재산권 전문위원을 추가하는 등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피해가 하루하루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술적 진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IP 범죄에 있어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아직 우리는 미국과 같은 세부적인 입법활동이나 구체적인 전략계획 수립 등의 법제도적인 활동은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IP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IP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2011. 9 |

18) supra note 5.

19) 한국 검찰청(<http://www.spo.go.kr/spo/major/intelpro/data/intelpro02.jsp>) 범죄최종방문일 : 2011.8.17.